

## 26. 주택공제조합보증규정시행세칙중 개정세칙

자료제공 : 주택사업공제조합

### 개 정 이 유

한국토지공사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지적미정리 택지에 대하여는 부지공급자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양도각서, 토지소유권에 대한 권리 및 토지매매대금환급금 양도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의 취급을 허용토록 하고 있으나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는등 이사회가 조합의 채권보전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이나 양도각서등의 징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함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제112조 보증취급방법등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불구하고 한국토지공사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지적미정리 택지의 경우에는 부지공급자와 협약(별지서식 보 제44-2호)을 체결하고 보증을 취급할 수 있으며, 부지공급자가 협약체결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각서(별지서식 보 제44-3호)와 토지소유권에 대한 권리 및 토지매매대금환급금 양도통지서(별지서식 보 제44-4호)를 제출받고 보증을 취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12조 보증취급방법등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한국토지공사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지적미정리 택지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보증을 취급할 수 있다.</p> <p>1. 부지공급자와 협약(별지서식 보 제44-2호)를 체결한 경우</p> <p>2. 양도각서(별지서식 보 제44-3호)와 토지소유권에 대한 권리 및 토지매매대금환급금양도통지서(별지서식 보 제44-4호)를 제출한 경우</p>

